

1. 제안이유

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폐지,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토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(법률 제21180호, '25. 12. 2. 공포)됨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발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항 및 서식을 삭제하고, 중대교통사고 접수 발생 시 보고 대상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차령 연장 권한이 이양되어, 운송사업자가 차령 연장을 위한 신청서 제출 대상 기관으로 대도시 시장을 추가(안 제3조제4항, 제107조제2항)
- 나.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이 되는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에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을 명확히 규정(안 제19조제1항)
- 다.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영업 의사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도록 지자체 신규면허기준에 차익거래 예방 사항 포함(안 제19조제6항)
- 라. 중대 교통사고 보고서 접수 기관을 시·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까지 확대(안 제41조제2항)
- 마.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에 대한 관련 세부

사항을 규정한 조항 및 신고 서식 삭제(안 제44조의5, 별지 제23호의2, 별지 제23호의3)

바.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교육 결과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(안 제49조제8항)

사. 교육실시기관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거나,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(안 제58조제4항)

아.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도 여객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(안 제88조의2)

자.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심야 시외버스 내 성추행·폭행 예방에 대한 안내방송 실시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입석금지 교육 실시 의무화를 추가(안 별표 4 제1호)

차.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무기·흉기·마약류 반입을 제한 및 이에 대한 안내를 추가(안 별표 4 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사전검토 결과
규제 강화 2건 심사 대상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가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(이하 “대도시”라 한다)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도시 시장이 제107조에 따른 차령 연장을 관장한다.

제19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자동차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조”를 “자동차,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호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차익 거래 방지를 위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41조제2항 본문 중 “시·도지사에게 보고한”을 “시·도지사(제2조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)에게 보고한”으로, “시·도지사에게 제출”을 “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제출”로 한다.

제44조의5를 삭제한다.

제4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양성교육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를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하고, 별지 제32의4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거나 운수종사자가 교육실시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(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로 한다.

제107조제1항 전단 중 “관할관청”을 “관할관청(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 사무소가 대도시에 소재한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으로 한다.

제108조의2제3호, 제6호, 제12호, 제14호, 제16호, 제20호, 제21호, 제24호, 제26호, 제27호 및 제30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4 제1호가목 15) 중 “안전사항에”를 “안전사항, 폭력 및 성폭력 예방에”로 한다.

별표 4 제1호가목 22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운송사업자(광역급행형·직행좌석형·좌석형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)는 운수종사자에게 입석을 금지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

다.

별표 4 제2호마목 1) 중 “다른 여객에게 위해(危害)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,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”을 “다른 여객에게 위해(危害)를 끼치거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,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, 무기·흉기, 마약류 등을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3호의2 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 서식을 삭제한다.

별지 제32호의4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55호 서식의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4항, 제41조제2항, 제88조의2 및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관할관청이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 20**-신규/보수/수시-***** 호

운수종사자 (신규/보수/수시) 교육수료증

1. 성 명:

2. 생년월일:

3. 소 속 :

4. 교육기간:

위 사람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5조, 같은법
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(신규/보수/수시)교육을 수료
하였으므로, 이 증명서를 드립니다.

교육실시기관

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 할관청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조(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 할관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사무 소 소재지가 「지방자치법」 제 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·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 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(이하 “대도시”라 한다)에 있는 경우 에는 그 대도시 시장이 제107조 에 따른 차령 연장을 관장한다.</u>
제19조(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등) ① 제18조에 따라 개 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 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 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 용할 수 있다.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일 것 가.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 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	제19조(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가. ----- -----

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1. ~ 3. (생략)

⑦ ~ ⑩ (생략)

제41조(사고 시의 조치 등) ① (생략)

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·장소 및 피해 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44조의5(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) ① 법 제21조제10항제3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

--. 다만, 제2호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차익 거래 방지를 위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⑦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41조(사고 시의 조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시·도지사(제2조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)에게 보고한 ---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제출---. ---.

<삭제>

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자동차등록번호

2. 운송계약의 당사자

3. 계약일시

4. 탑승자 수

② 법 제21조제10항 및 영 제12조의3에 따라 운행정보를 신고하려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운행정보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삭제

2. 삭제

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조합은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운행기록증을 발부하여야 하며, 발부 현황 자료를 운행기록증 발부일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증을 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창의 중앙 하단에 부착(전자적 매체·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여야

한다.

제49조(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
자격요건 등) ① ~ ⑦ (생략)

<신설>

제58조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 ①
~ ③ (생략)

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“교육이수”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.

⑤ · ⑥ (생략)

제88조의2(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) 시·도지사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는 경우

제49조(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
자격요건 등) ① ~ ⑦ (현행과
같음)

⑧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양성교육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8조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 ①
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를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하고, 별지 제32의4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거나 운수종사자가 교육실시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
제88조의2(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) 시·도지사(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.)-

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07조(차령 연장) ①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(일반택시운송사업자,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별지 제55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자동차검

[illegible]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[illegible]

사대행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검사대행자를 통하여 해당 서식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08조의2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1. 2. (생략)

3. 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설치

4. 5. (생략)

6. 제18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

7. 삭제

8. ~ 11. (생략)

12. 제30조에 따른 운송약관의 기재사항

13. (생략)

14. 제41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

고 주 사무소가 대도시에 소재한 경우에는 그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-

--. -----

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08조의2(규제의 재검토)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4. 5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8. ~ 11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13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u>치 등</u>	
15. (생 략)	15. (현행과 같음)
<u>16. 제50조, 제52조부터 제54조</u> <u>까지, 제55조 및 제56조에 따</u> <u>른 운전자격제도의 운영</u>	<u><삭 제></u>
17. ~ 19. (생 략)	17. ~ 19. (현행과 같음)
<u>20. 제63조에 따른 자동차대여</u> <u>사업의 영업구역 등</u>	<u><삭 제></u>
<u>21. 제65조에 따른 자동차대여</u> <u>사업계획의 변경등록</u>	<u><삭 제></u>
22. · 23. (생 략)	22. · 23. (현행과 같음)
<u>24. 제79조에 따른 사용약관의</u> <u>신고</u>	<u><삭 제></u>
25. (생 략)	25. (현행과 같음)
<u>26. 제81조에 따른 여객자동차</u> <u>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</u>	<u><삭 제></u>
<u>27. 제84조에 따른 여객의 혼잡</u> <u>방지 등</u>	<u><삭 제></u>
28. (생 략)	28. (현행과 같음)
29. 삭 제	
<u>30. 제9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</u>	<u><삭 제></u>
<u>31. 제96조에 따른 연합회의 설</u> <u>립</u>	<u><삭 제></u>
<u>32. 제10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</u> <u>차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</u>	<u><삭 제></u>
33. (생 략)	33. (현행과 같음)